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협업을 촉진하고, 협업 과제의 실행부터 사업화 검증(PoC)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 전문성과 적극적인 실행역량을 갖춘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 (업력 10년 이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예시 영역을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I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2026년 8월 6일(목) ~ 8월 20일(목) 18:00
- (지원목적) 민간 대·중견 기업과의 시범적인 연계를 통해 예술기업 성장지원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기회 제공
- (지원규모) 총 5개사, 선정기업별 40백만원
 - ※ 총 사업비 10% 자기부담금 필수 (현물 제외)
- (지원대상) 업력 10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 (협약기간) 2026년 9월 ~ 12월(약 4개월)
- (수요기업) 노루페인트, 저스피스재단, 퍼시스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자동차그룹
-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과 1:1 매칭 및 협업 기회 제공
 - 협업과제 사업화 검증(PoC) 지원금
 - 협업 과정 내 전담 모더레이터 및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사업 홍보·마케팅,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을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 성과 확산 등 선정기업 후속 지원 ※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하단 III. 지원 세부내용 참고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26.08.06.(목)) 업력 10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 (개인 및 법인사업자) ※ 2026년 예술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지원 불가

<업력산출 기준 참고사항>

○ 신청 가능 업력 : 2016년 8월 6일 ~ 2026년 8월 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동종전환 및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

*포괄양수양도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의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②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창업도약/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③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⑤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⑦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다만, 구성원에 포함된 그 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⑧ 「근로기준법」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함

< ⑨항 예외사항 >

1.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경우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⑪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⑩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⑫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gambling·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⑭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해당하는 자

III 지원 세부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직접지원)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자금 40백만원 (자기부담금 10% 필수, 현물 제외) • 협업과제 기획, 사업화 검증(PoC), 사업화 과정에서의 소요비용 지원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자기부담금(10%) * 총 사업비 정산 필수	
(기본 프로그램)	
지원구분	세부내용
기업진단	• 사업 역량 진단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전담 모더레이팅	• 지속적으로 협업 전반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모더레이터 제공 • 수요기업-선정기업 간 협업 촉진 및 사업화 과정 멘토링 제공
전문가 컨설팅	• 사업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운영(투자, 재무, 마케팅, IT, 지식재산권 등)
성과관리	• (중간점검)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집행 등에 대한 점검 • (최종점검) 협약기간 내 실증 결과 집계(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등)
후속지원 검토	• 사업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협업 가능성 검토 및 연계 기회 제공
(수요기업별 협업과제)	
○ 수요기업 1개사 및 과제내용 1개 선택 ※ 협업과제 세부내용은 '[별첨] 수요기업 협업과제 상세기술서' 확인 ○ 제안내용은 추후 수요기업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수요기업명	협업과제 주요내용
 NOROO 노루페인트	자사 제품을 활용한 공간 기반의 예술 콘텐츠와 고객 경험 프로그램 1) 자사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공간 체험형 미디어아트 구현 2) 실물 제품(페인트, 반려용품, 소재 등) 활용 체험을 통한 브랜드 경험 콘텐츠 개발
 JUSPEACE FOUNDATION 저스피스재단	기후평화 확산과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주제로 한 예술 공익캠페인 1) 기후평화 확산, 2)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목하여 글로벌 고객대상 경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익캠페인 추진

수요기업명	협업과제 주요내용
FURSYS GROUP 퍼시스그룹	‘데스커’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3D/가상 공간 기반 맞춤형 가구 연출 및 홍보 콘텐츠 개발 1) ‘데스커’ 주요 제품의 3D/가상 공간화 및 공간 체험 솔루션 개발 2)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홍보 콘텐츠 제작 시스템 개발
 한화호텔&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자사 리조트 공간과 연계한 고객 맞춤형 예술 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1) 객실 내 체류 가치를 높이는 고객 맞춤형 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2) 리조트 유희/공공 공간을 활용한 고객 참여·체험형 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및 우주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달 탐사 콘셉트 기획 1) 달 탐사 로봇, 로버(Rover)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기획 2) 가상의 달 탐사 환경 구현을 위한 예술 콘텐츠 및 로버 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 수요기업 및 과제내용 복수 신청 불가, [별첨] 수요기업 협업과제 상세기술서' 필독

○ (사업비 편성항목)

목	세목	세부내용	비율	비고
인건비 (110)	보수 (01)	-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업비 세부 편성 기준은 지원신청서 <참고2> 총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필수
	기타직보수 (02)	- 계약직 지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4)	-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운송비, 연구비, 본 프로젝트 개발 관련 S/W, 서버 월 사용료 등		*기업 자산성 물품 및 용역 편성 불가
	임차료 (07)	- 장비 및 장소 임차료		
	일반용역비 (14)	- 외부 대행 용역비(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웹앱 시스템 개발, 촬영 및 영상 제작 등)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2회 분할 교부

※ 국고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 진행 필수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진행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 신청기간) 2026년 8월 6일(목) ~ 8월 20일(목) 18: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26.08.20. 18시00분 정각 접수 자동 마감 (신청서 제출 버튼 자동 비활성화)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첨부 필수

- (필수 제출서류) 총 4종

제출서류	파일형식
1. [양식_붙임 1] 지원신청서	HWP
2. [양식_붙임 2] 발표자료(PPT) - 발표 평가 시 사용 자료	PDF
3. [양식_붙임 3] 통합서식 서식 1.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서식 4. 지원사업 참가자 서약서	PDF * 서식 1~4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4. 증빙서류	PDF
① 사업자등록증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 - 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③-1 포괄승계계약서(해당 시) ③-2 양도 대상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양수양도*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필수 제출 포괄양수양도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④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개인사업자에 한해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없을 시 수지계산서 제출 가능(붙임 1. 내 참고)	

※ 증빙서류 4-1. ~ 4-4. 발급 및 상세 안내는 [붙임1] 지원신청서 필수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6.08.06.)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선택 제출서류)

제출서류	파일형식
5.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실적(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 등	PDF
6.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 - 표지 포함 10p 이하	PDF

○ (주의사항)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신청오류(e나라도움 지원사업 선택 오류, 지원 신청서 오제출 및 미제출 등)는 심사에서 제외
- 신청·접수 마감(‘26.08.20.(목), 18:00) 기한 내 e나라도움 시스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
- 신청·접수 마감(‘26.08.20.(목), 18:00) 당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 및 제출 지연 등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장애신고 등 문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V

선정기업의 의무 및 역할

○ (신청 시)

- 선정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 후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성과목표(산출물, 사업목표 등)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및 수행 일반)

- 선정기업의 사업 시작일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와의 협약체결일로 함
-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지원사업 정산매뉴얼, 기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공모 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선정기업은 센터와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예술인의 인권존중·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검증비용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검증비용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검증비용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선정기업 대표(선정자)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하며, 검증비용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확정된 사업화 검증 비용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제재 가능함
-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검증 비용 집행이 있을 경우 사업 취소, 검증 비용 반납 조치함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집행 마감 기한 준수

1. 집행 가능 기간 : 교부일 ~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2. 제출서류 : 2026년 12월 21일(월)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 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 사업 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수행 시)

- 선정기업은 심사를 통해 확정된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보육사와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집행 필수임
- 사업선정 이후 지원사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과제 추진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하며,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 기간(협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 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사업비(자기부담금 포함)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센터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모니터링에 의한 보완·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응하여야 함

VI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6년 8월 4주 ~ 9월 1주(예정)

공모접수 (~8.20(목))	요건검토 (8.21(금))	1차 심사(서류) (8.26(수))	2차 심사(발표) (9.2(수))	선정공고 (9.4(금))
8월 20일(목), 18:00까지 온라인접수	중복신청, 오제출, 서류미비, 신청자격 등 결격자 검토	서류심사 (최종 선정 건수 2배수 내외 선정)	발표 및 인터뷰 심사	최종 선정 결과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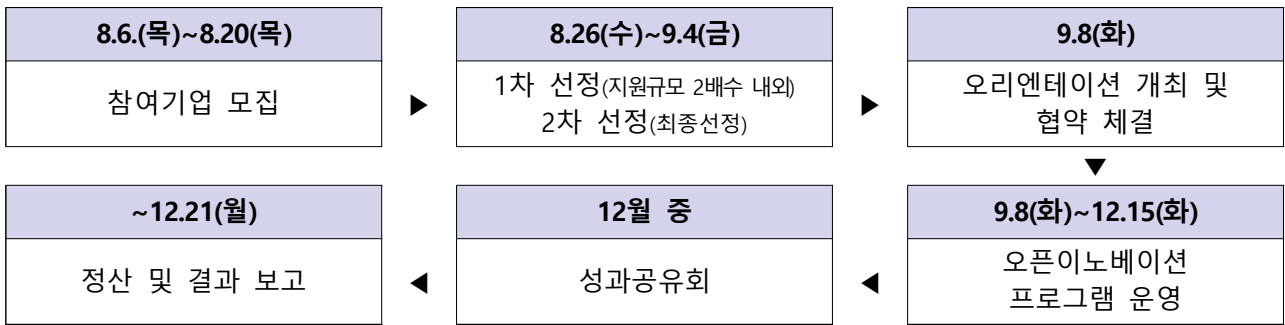
○ (선정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선정

※ 2차 선정(발표)의 경우 1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방법 및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

○ (심사방법)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 및 인터뷰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제출서류 기반 신청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제안사업의 우수성, 협업 및 실행계획 및 기대 성과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 운영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 지원사업 문의

- (문 의 처)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운영국
- (문의방법) 전화 및 이메일
 - (전화) 070-4135-5511
 - ※ 전화문의 :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26kams.startup@gmail.com